



제 410 회 국 회 (정 기 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 강화〉

-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055호)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340호)
- 이상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443호)

2023.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개 요

【류호정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영배의원안】

1. 제안 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이상헌의원안】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5

1.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류호정·이상헌의원안 제26조 제2항 신설 등) 5
2.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약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류호정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 14
3.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김영배의원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19

I. 개 요

【류호정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류호정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8. 29.

다. 회부연월일 : 2023. 8.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선불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6조제2항 신설 등).

【김영배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8.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상헌의원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헌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14.

다. 회부연월일 : 2023. 9.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II. 검토의견

1. 체육시설업자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류호정·이상헌의원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보험 가입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의무(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제외) - <신설> ○ 보증보험 미가입 제재 - <신설> - <신설> ○ <신설>	○ 보험 가입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의무(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제외) - <u>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휴·폐업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u> ○ 보증보험 미가입 제재 - <u>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등</u> - <u>100만원 이하 과태료</u> ○ <u>신고 체육시설업에 요가업, 필라테스업 추가(이상헌의원안)</u>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선불이용료를 수납한 경우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류호정·이상헌 의원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 45,507건 중 ‘회원권’ 품목에 대한 접수가 4,431건으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회원권 품목 내 소분류별로 보면, ‘헬스장’ 2,654건(59.9%), ‘필라테스’ 804건(18.1%), ‘골프회원권’ 205건(4.6%) 등의 순이며, 신청이유별로는 ‘계약관련’ 4,300건(97.0%), ‘품질 A/S 관련’ 42건(0.9%) 등의 순이었음.

[표 1] 최근 3년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소분류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헬스장	3,068	2,406	2,654
필라테스	0	662	804
골프회원권	63	128	205
콘도회원권	138	151	179
종합체육시설회원권	54	189	177
기타회원권	132	113	152
요가	0	156	128
레저·이벤트회원권	21	33	47
수영장회원권	29	36	38
할인회원권	10	25	28
테니스장스쿼시회원권	7	15	19
계	3,522	3,914	4,431

주: 필라테스와 요가는 2021년 신설 품목

자료: 한국소비자원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폐업 전 낮은 단가로 회원을 대규모로 모집한 후 폐업을 하는 헬스장 등이 보도되면서,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¹⁾

1) ‘헬스장 ‘먹튀’ 폐업 기승...구제 어려운 이유는?’, KBS뉴스, 2023.11.20.

현행법상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통지 없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²⁾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³⁾ 민사·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중재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 단체소송 등의 수단은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 규모에 비해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현행법상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⁴⁾

2)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7조(권리남용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3)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이외에도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등 영업 중단으로 이용자가 받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송 등의 수단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보다 실효적인 보험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증보험 시장규모와 관련 보험상품 개발수준 등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영업비용이 상승하고 이를 이용가격에 전가한다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음. 특히 보증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는 가입자 수,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 수를 고려한 보험 가입가능성과 상품개발의 가능성을 보험사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유자산 및 매출규모가 영세한 체육시설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세 체육시설업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임.

수 있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른바 ‘먹튀 체육시설업장’의 경우 선불이용료 결제 시 계좌이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으로 할부거래 자체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음.

참고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이용료 선불 체육시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2018.11.)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용자가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장기이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안정적 매출확대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둘째, 보증보험 가입 대상 업종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① 현재 선불이용료 수납 후 폐업으로 인한 문제는 주로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인 등록 체육시설업 3종, 신고 체육시설업 18종 등 총 21종에 일률적으로 선불이용료 수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② 또한, 현행 법령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필라테스업, 요가업 등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⁵⁾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될 경우 시설기준(제11조), 안전·위생 기준(제24조)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재 자유업종인 필라테스업, 요가업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5) 이상현의원안의 경우 필라테스업,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보증보험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한다는 측면과 관련 보증보험 상품의 존재 내지 개발가능성과 경제성 및 가입 의무화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상승이라는 측면, 가입대상 업종의 적정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류호정의원안	이상헌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선불이용료</u> ”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

6) 현재 신고 체육시설업에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0호,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이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에 계류중임.

현행	류호정의원안	이상헌의원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 시설업, 수영장업, 체육 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u>인공암벽 장업</u>	2. (현행과 같음)	2. ----- ----- ----- ----- ----- ----- ----- ----- <u>인공암벽 장업, 요가업, 필라 테스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보험 가입) (생략)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 (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제2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 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 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 이용료(회원 또는 일반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는 대가로서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말한다)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의

현행	류호정의원안	이상헌의원안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시정명령)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	<u>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30조(시정명령)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1항에----- <u>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u>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	제40조(과태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에----- <u>보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u> -----

현행	류호정의원안	이상헌의원안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약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류호정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소음·진동 방지, 사행행위 조장·목인 금지, 이용약관 준수 -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을 일반 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 반환 +<단서 신설>: ①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체육시설업의 휴·폐업의 경우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약정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불리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름: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라도 해당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류호정의원안 제22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반환 시 지켜야 할 기준과 관련된 사유로, ①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별도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⁷⁾

일반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개별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약관의 형식으로 약정될 경우 약관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임.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회원권’ 분야 피해 중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00건으로 전체 구제신청의 97%를 차지하여 계약 관련 이용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회원권 분야 신청이유별 현황

구분	계약	품질·A/S	부당 행위	안전	약관	기타	가격·요금	표시·광고	계
건수 (비율)	4,300 (97.0)	42 (0.9)	33 (0.7)	20 (0.5)	14 (0.3)	10 (0.2)	8 (0.2)	4 (0.1)	4,431 (100 %)

자료: 한국소비자원

7)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계약 관련 피해는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데, 불공정 계약의 내용은 사용일수에 비례하지 않는 이용자의 부담금액, 귀책 사유가 이용자 또는 사업자 등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위약금 청구 등임.

참고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준수해야 할 반환기준(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전체 이용료에서 이미 경과한 일수(횃수)분 이용료를 제한 것을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이용료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일반이용자 과실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체육시설업자 과실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귀책사유자 별로 위약금 부과대상을 정하는 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료 계약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표 3] 이용료 반환기준(시행령 별표 3의2)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① 일반이용자가 본인 사정상 이용불가	이용개시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 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 \cdot \text{횟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cdot \text{횟수}})$] - 위약금
② 체육시설업 휴·폐업	이용개시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 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 \cdot \text{횟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cdot \text{횟수}})$] + 위약금

주: 1)“위약금”이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수준보다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용자를 보호하여 체육시설 이용당사자 간의 공정계약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류호정의원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현행	류호정의원안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u><단서 신설></u> 가.·나. (생략) 5. (생략) ② (생략)	----- ----- -----것. <u>다만,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 가.·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김영배 의원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신고 체육시설업) - 3개월 이상 휴·폐업 통보: 체육시설업자 → 지자체장 / 미통보 시 휴·폐업 처리 - <신설>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신고 체육시설업) - (현행과 같음) - 휴·폐업 통지: 체육시설업자 → 회원 및 일반이용자 + 미통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김영배의원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통보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체육시설업자가 30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⁸⁾

8)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는 체육시설의 휴·폐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신규 계약이나 계약의 갱신, 이용 계획의 설정 등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 또한, 장기간의 선불이용료를 지불하는 체력 단련장의 경우 장기간 등록 이후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 대응이 곤란한데, 관련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바도 있음.⁹⁾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시설의 휴·폐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휴·폐업 통지 대상으로 체육시설업장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서 체육시설업자의 관리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이 휴·폐업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면책사유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9) “내일부터 운영 중단” 대구서 대형 헬스장 돌연 폐업, 연합뉴스, 2023.11.10.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¹⁰⁾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¹⁾

10)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김영배의원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0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6. (생략) ② (생략)	6.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75